

제2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8. 5. 4.(서면심의)

□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2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본 조사에 앞서 계약상대자 투입장비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할 것.
- 보수대상구간 선정 시 SPI 기준에 있어 도로기능(자동차전용도로, 버스 중앙차로 등)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도로특성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
- 포장상태 조사 시 다음 사항 추가 검토할 것.
 - 도로 주요통행차량의 중량 및 교통량
 - 차선별 파손 현황
 - 아스팔트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파손원인 및 보수방법
 - 준공 후 2, 4, 6, 8, 10년 등 준공 후 시기별 파손상태
- 포장상태 조사자료 분석 시 다음 사항 추가 검토할 것.
 - 조사구간별 맨홀주변파손, 동공
 - 대기온도, 강수량, 강설량 등 환경변화에 따른 분석
 - 상·하부 구조에 따른 파손원인 분석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공통 및 토목	<p>1. p4) ‘포장상태 조사방법 신뢰성 평가’ 항목에서 본 조사에 앞서 계약상대자 투입장비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할 것.</p> <p>2. p7) 보수대상구간 선정 시 SPI 기준에 있어 도로기능(자동차 전용도로, 버스중앙차로 등)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도로특성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</p> <p>3. p11) ‘신기술·신공법 인증 체계 개발’ 항목에서 과업내용으로 보아 기 인증된 신기술·신공법의 적용성, 유용성 등을 검증하는 체계로 보이므로 과업내용서상의 제목을 ‘신기술·신공법 검증 체계 개발’ 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.</p> <p>4. Ⅲ. 과업수행 방법에 ‘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’ 항목 추가할 것.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)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)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)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</p> <p>5. 과업내용서상 오타 수정 및 제시된 관련규정 현행화 할 것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5) ‘~소성변형은 횡방향 프로파일로부터 측정한 고저차로 0m 간격으로 산출하고,~’에서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 간격으로 수정할 것. - p21) 용역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→ 용어의 사용 ~ - p27) ~협의 불가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, ‘2015.12.29.)에 따른다 →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, ‘2018.1.22.) <p>6. p33) ‘성과품 제출’ 항목에서 현재 기술용역 성과품은 기술심의 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정보소통광장에</p>	

	공개하는 내용은 삭제하고(서울도서관 제출사항은 유지)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납품받아 비공개자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 직접 시스템에 등록할 것.	
--	---	--

2018년 4월 일

심의위원 : 기술심사담당관 김 홍 길 (서명)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계약	<p>1. III. 과업수행 방법 4. 계약상대자의 책임 (1) 가. 1) 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” 지방계약법 20조 및 21조에 의거 용역하자 책임 범위 및 기간 규정 (2) 가. 2) “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”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서술 식 설명 기술 (3) 다. 1) “관계법규” 도로 위 작업안전을 위한 법규 명시 예) 도로안전 시설에 관한 법령 등</p> <p>2. III. 과업수행 방법 5. 적용기준 (1) 가. “관련규정 등 개정된 경우 등 관련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” 문맥상 불필요</p> <p>3. III. 과업수행 방법 6. 자문 등 (1) 가. 1) “전체 용역과업” 필요 용역을 서술 (2) 다. 항 과 사. 항 의 내용 일치</p> <p>4. III. 과업수행 방법 7. 보안과 비밀유지 (1) 가. 1) “보안관계 법규” 해당법규 명시 예)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기준</p> <p>5. III. 과업수행 방법 12. 하도급 사항 (1) 라. “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에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” 용역 지연방지를 위해 7일 이내 통지 (2) 사. “30일” 용역 지연방지를 위해 14일로 조정</p> <p>6. III. 과업수행 방법 13. 용역수행자의 교체 (1) 가. “충분한” 관련 문서(예: 유의서) 또는 관련법규(예: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)로 대체</p>	
종합의견	조건부 채택	

2018년 4월 18 일

심의위원 : 이 대 형 이 리(서형)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교
토질 및 기초	<p>1. 2. 포장상태 조사자료 분석 및 평가 가. 표면결함, 소성변형, 평탄성 자료분석 3)항 내용보완 3)~, 소성변형은 횡방향 프로파일로부터 측정한 고저차로 "0m" 간격으로 산출하고,~ → 3)~, 소성변형(러팅)은 횡단프로파일 등의 방법으로 100m마다 차로별로 실시하거나, 노면 정상 자동측정차로로 이용하여 산출하고,~</p>	p.5
	<p>2. 2. 포장상태 조사자료 분석 및 평가 라. 도로포장 준공식후 및 하자보수기간 포장상태 분석 2)항 내용보완 2) 2018년에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도로포장 보수구간 중 일부에 대하여 포장상태를 조사한다. → 2) 2018년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구간중 포장상태 조사대상은 하자만료기간 최소 90일전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(상태분석 및 하자만료 행정절차 기간 약 3개월 추정).</p>	p.7
	<p>3. 사. 효율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장단기 소요 예산분석 2)항 ㉠항 내용 보완 ㉠ SPI 6.0이하~ → ㉠ SPI 6.4이하~ (파일내용서 p.7 마. 3)보수대상을 SPI 6.4이하로 선정,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로드맵에서 SPI 6.5이상을 목표로 선정)</p>	p.8
	<p>4. 3. 장기공용성 추적조사분석 및 D/B관리 나. 신규(18년도)장기공용성 구간선정 및 조사분석 2)항 조사항목 내용 추가 ㉞ 배수시설(배수상태, 측구 등).</p>	p.11
	<p>5. 9. 용역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마.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7)항 내용 수정 7)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. → 7) 공법에 대한 검토서 첨부 및 설명서 작성</p>	p.23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질 및 기초	<p>6. 10. 용역감득 등 가.항 및 2)항 내용수정. 가.~수행함에 있어 "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" 에 따라~. → 가.~수행함에 있어 "과업수행계획" 에 따라~. 2) "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현황" 및 업무수행상태. → 2)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, 유지보수 전략 수립 등의 업무 수행 상태.</p>	p.23
	<p>7. 12. 하도급 사항 가.항 내용보완 가.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사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. → 가.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,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.</p>	p.24
	<p>8. 12. 하도급 사항 사.항 내용 수정. 사.~체결한 날로부터 "30일" 이내~통보일로부터 "30일" 이내로~. → 사.~체결한 날로부터 "15일" 이내~통보일로부터 "7일" 이내에~. ("15일" : 용역기간(1년)이내에 비해 통보기간이 길고 타업체 내용서 통상 15일 "7일" :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)</p>	p.25
	<p>9. 12. 하도급 사항 내용추가 → 차.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금과 기성금,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대금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(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①항, 제13조 ③항).</p>	p.25
	<p>10. IV. 각종보고 및 성과품 2.과업수행계획서 내용 추가 → 8) 품질보증계획 및 신뢰성 평가 계획서(포장상태 조사장비의 장비 신뢰성 평가 등)</p>	p.30
	<p>11. 6.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나.성과품 납품 수량 및 내용 항목 추가 → 자문, 심의 및 심사 협의 등 결과 반영 보고서 1식(소요량)</p>	p.32
종합의견	조건부제택	

2018년 4월 일

심의위원 : 곽 창 진 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의 과업명과 과업내용서의 과업명과 일치요망 - p1 과업내용서 일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. 과업명 : 『2018년 서울특별시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』용역 · 2. 과업목적 : 서울특별시의도 포장상태 ~ · 신기술·신기술 인증체계 ⇒ 신기술·신공법 인증체계 · 3. 과업의 대상 : 서울특별시도 전역 · 4. 과업의 범위 가. 공간적 범위 : 서울특별시도 ~ - p2 5. 과업의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. 특별시도 포장상태 조사 ⇒ 도로 포장상태 조사 · 나. 포장상태 조사자료 ~ ⇒ 도로 포장상태 조사자료 ~ - p4 II 과업의 세부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. 특별시도 포장상태 조사 ⇒ 서울특별시도 포장상태 조사 · 특별시도 포장상태 ⇒ 도로 포장상태 - p18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다. 안전관리 의무에 포장상태 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항 추가요망 · 마. 청렴의 의무 추가 요망 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8년 4월 17 일

심의위원 : 황 인 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도로	<p>1. 포장상태조사 시 검토 요망사항</p> <p>(1) 도로 주요통행차량의 중량 및 교통량에 대한검토 (2) 차선별 파손 현황 (3) 아스팔트혼합물의 종류에 따른 파손원인 및 보수방법 (4) 준공 후 2, 4, 6, 8, 10년 등, 준공 후 시기별 파손상태 검토</p> <p>2. 포장상태 조사자료 분석 시 요망사항</p> <p>(1) 조사구간별 맨홀주변파손, 동공, 추가검토필요 (2) 환경변화에 따른 분석 - 대기온도, 강수량 강설량에 대한검토 (3) 상.하부 구조에 따른 파손원인 분석</p> <p>3.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마련이 필요</p>	
종합의견	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제심)	

2018년 4월 16 일

심의위원 : 강 창 구 (서명)

강창구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도로	<p>1. 포장상태 조사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 내용 언급 (1) P4. 「조사 노선 및 구간을 선정하고, 교통량 및 도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다.»에서 “전체 연장에 따른 투입 인원/장비, 소요기간, 투입시간대, 조사구간 선정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계획을 수립“ 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업무수행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</p> <p>2. 신기술·신공법 인증 체계 시행 절차 및 지침(안) 수립시 타기관의 지침을 비교·분석토록 명기 (1) P12. 「1) 신기술·신공법 인증 체계의 각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상세절차를 수립하고, 관련 지침(안)을 작성한다.»에서 “지침(안) 작성시 타기관에서 시행중인 지침을 비교·분석하고 도입이 필요한 신규 절차 등을 제안한다“ 라고 명기 ※ 나공사, 철도시설공단,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 마다 특성있는 제도 도입 시행중</p> <p>3. 용역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명기 (1) P25. 「13. 용역수행자의 교체」에서 “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인력의 업무집중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참여인원을 끝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, 용역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 인력은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운영하며 비정규인력을 참여시킬 수 없다.” 항목 명기</p> <p>4. 월말 정기공정 보고 관련 부진공정 발생시 만회대책 수립 명기 (1) P30. 「1)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」에서 “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” 라고 명기</p> <p>5. 성과품 종류에서 활용성 고려 외장하드 추가</p>	

	<p>(1) P32. 「나. 성과품 납품 수량 및 내용」에서 “외장하드(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, 기타 연구수행 관련자료 수록) 2개 ” 명기</p>	
<p>종합의견</p>	<p>조건부 채택</p>	

2018년 4월 18 일

심의위원 : 김 철 중

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2018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p1</p> <p>1.과업목적 추가 마.노면표시 재료가 포장면의 크랙발생에 끼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검토</p> <p>2.조사항목 추가</p> <p>1)유지보수 포장시 1차로씩 절삭하여 포장후 조인트를 감추기 위하여 조인트부위에 융착식 차선도색은 균열을 촉진시키는 잘못된 작업방법(아스팔트와 도료의 신장률 인과관계조사)</p> <p>2)노면표시 구간과 노면표시가 없는 구간의 균열 발생 빈도 비교</p> <p>※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발주시 차선도색 품질확보 방안을 포함 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.</p>	<p>p1</p> <p>p10</p>
종합의견	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조건부

2018년 4월 18일

심의위원 : 한금숙 (서명)

